

2024. 5. 6.

- 2023 회계연도 -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충청남도지사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 4. 25. ~ 5. 6.(12일간)
- 검사내용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 등
- 검사위원(13명)
 - 대표위원 : 윤희신 충청남도의회의원
 - 위원(12) : 신영호 충청남도의회의원, 김민수 충청남도의회의원
배상열, 한근희 공인회계사 / 배성훈 세무사
가국일, 김효신, 손종필, 이미원 예산회계전문가
이상용, 백승석, 윤희성 전직 공무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1
I.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	3
	1. 충청남도 재정 현황	4
	2. 세입·세출 결산	5
	3. 기금 결산	12
	4. 재무제표	13
	5. 성과보고서	15
	6. 성인지 결산	16
	7. 결산서 첨부서류	17
II.	개선해야 할 사항	19

결산검사 의견서

충청남도지사 귀하

2024년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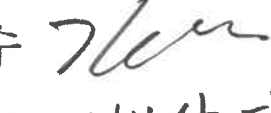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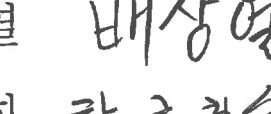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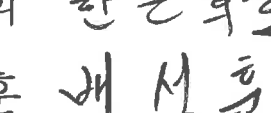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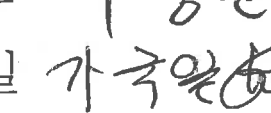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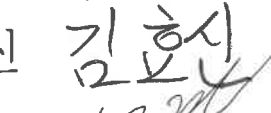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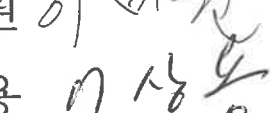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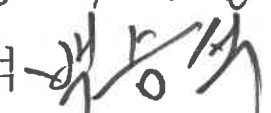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로부터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1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충청남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충청남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계속비이월액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윤 희 신	
검사위원	신 영 호	
검사위원	김 민 수	
검사위원	배 상 열	
검사위원	한 근 희	
검사위원	배 성 훈	
검사위원	가 국 일	
검사위원	김 효 신	
검사위원	손 중 필	
검사위원	이 미 원	
검사위원	이 상 용	
검사위원	백 승 석	
검사위원	윤 희 성	

I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

【개 요】

금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2023 회계연도 충청남도의 결산서 및 재무제표 등이며, 본 검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재정 현황
2. 세입·세출의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5. 성과보고서
6. 성인지 결산
7.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며,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요구 시 수입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과중한 부담완화를 위해 자료요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통해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상기내용 외에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후술 하였습니다.

1. 충청남도 재정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 입(A)		7,070,013	8,943,171	9,782,518	10,258,448	10,215,562
세 출(B)		6,892,638	8,554,743	9,251,942	9,614,957	9,871,307
채무상환(C)		-	-	-	-	-
잉여금 (A-B-C)	소 계	177,375	388,428	530,576	643,491	344,255
	다음연도 이월액	145,562	123,870	284,208	308,296	242,809
	보조금실제반납금	9,936	6,404	3,917	4,322	12,018
	순세계잉여금	21,877	258,154	242,451	330,873	89,428

2023년 세입은 전년대비 429억원(0.4%) 감소하였고, 세출은 2,564억원(2.7%)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94억원으로 전년 3,309억원 대비 2,415억원(73%↓) 감소하였음.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수 익(A)	비 용(B)	재정운영결과(B-A)
2023	16,224,005	1,630,274	14,591,731	8,840,762	8,933,767	93,005
2022	15,987,122	1,370,015	14,617,107	9,114,095	8,724,074	△390,021
증감	236,883	262,259	△25,376	△273,333	209,693	483,026

2023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25,376백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483,026백만원 증가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197,002	10,215,562	9,871,307	344,255	242,809 (17,724)	12,018	89,428
일반회계	9,146,028	9,162,806	8,895,993	266,813 (17,724)	182,381 (17,724)	11,803	72,629
특별회계	1,050,974	1,052,756	975,314	77,442	60,428	215	16,799

※ 자금없는 이월액 17,724백만원은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기함

-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215,5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0,197,002백만원보다 18,56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6.6%인 9,871,307백만원으로 잉여금은 344,255백만원임.
- 이 중 명시이월액 36,015백만원, 사고이월액 16,504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90,290백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2,01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28백만원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전년도	9,078,438	9,287,186	9,247,955	1,868	37,363
당해연도	9,146,028	9,211,705	9,162,806	3,492	45,407
증 감	67,590	△75,481	△85,149	1,624	8,044

세입결산 개요

-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 주요 이유는 지방교부세 세입증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9,149,028백만원 중 9,211,705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5%인 9,162,80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0.04%인 3,492백만원이 정리보류 되었으며, 0.5%인 45,407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67,59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85,14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정리보류액 1,624백만원이 증가, 미수납액은 8,04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9,162,806	9,162,806	0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9,078,438	8,692,435	269,538	33,778	82,687
당해연도	9,146,028	8,895,993	200,105	10,410	39,520
증 감	67,590	203,558	△69,433	△23,368	△43,16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8,876,491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9,53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49,027백만원임.
- 지출액은
 - 예산현액의 97.3%에 해당하는 8,895,993백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03,558백만원이 증가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8건 200,105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은 충남넷 홈페이지서비스 향상 등 61건 34,027백만원
 - 사고이월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등 45건 33,281백만원
 - 계속비이월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등 72건 132,797백만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0,41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368백만원 감소함.
- 집행잔액은 39,520백만원으로
 -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임.
- 예비비는
 - 예산액 20,880백만원에서 17,300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7,177백만원을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소득 보전지업 사업 등 31건에 지출하였음.

- 세출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및 이체액은 600,031백만원으로
 - 전용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등 12건 851백만원
 - 이체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240건 599,180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895,993	8,895,993	0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회계연도 집행액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계	8,692,435	9,146,028	8,895,993	97.3	203,558	2.3%
일반공공행정	928,358	873,164	863,621	98.9	△64,737	△7.0%
공공질서 및 안전	549,119	572,968	571,004	99.7	21,885	4.0%
교육	454,574	416,271	416,270	100	△38,304	△8.4%
문화 및 관광	362,856	432,262	399,477	92.4	36,621	10.1%
환경보호	617,848	650,763	633,497	97.3	15,649	2.5%
사회복지	2,807,539	2,864,864	2,845,022	99.3	37,483	1.4%
보건	305,049	223,012	221,024	99.1	△84,025	△27.5%
농림해양수산	1,377,859	1,525,556	1,458,629	95.6	80,770	5.9%
산업·중소기업	279,016	274,442	256,192	93.4	△22,824	8.2%
교통 및 물류	330,120	422,327	371,924	88.1	41,804	12.7%
국토 및 지역개발	424,166	605,703	585,727	96.7	161,561	38.1%
과학기술	23,067	28,940	28,893	99.8	5,826	25.3%
예비비	-	3,580	-	0.0	-	
기타	232,864	252,176	244,713	97.0	11,849	5.1%

※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845,02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458,629백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 된 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161,561백만원, 가장 감소된 금액은 보건 △84,025백만원임.

(3) 특별회계(8개)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1,004,427	1,010,644	1,010,493	7	144
당해연도	1,050,974	1,052,902	1,052,756	32	114
증 감	46,547	42,258	42,263	25	△30

□ 세입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는 8개 회계이며 세입 예산현액 1,050,974백만원이고, 1,052,90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52,756백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32백만원, 미수납액 114백만원임.
- 회계별 실제 수납액은 다음과 같다.
 - 도청소재도시건설 3,749백만원, 균형발전 72,878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1,64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88,782백만원
 - 광역교통시설 1,729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5,173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8,121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520,679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52,756	1,052,756	0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1,004,427	922,522	58,745	87	23,073
당해연도	1,050,974	975,314	60,428	215	15,017
증 감	46,547	52,792	1,683	128	△8,056

□ 세출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0,974백만원이고,
- 지출액은
 -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92.8%에 해당되는 975,31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2,79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 지출내역은
 - 도청소재도시건설 3,074백만원, 균형발전 72,737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676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88,399백만원
 - 광역교통시설1,701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3,012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6,897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458,818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건 60,428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은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등 8건 2,288백만원
 - 사고이월은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건 647백만원
 - 계속비 이월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등 14건 57,493백만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총 215백만원으로
 - 도청소재도시건설 175백만원, 소방특별회계 40백만원임.
- 집행잔액은 총 15,017백만원으로
 - 도청소재도시건설 186백만원, 균형발전 49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3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32백만원,
 - 광역교통시설 28, 학교용지부담금 11,667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454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2,269백만원임.
- 예비비는
 - 예산액 1,310백만원에서 503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03백만원을 의용소방대 등 지원사업 등 3건에 지출하였음.
-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24건 427,240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975,314	975,314	0

3.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3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15개)	1,023,909	243,875	382,264	138,389	1,267,784
① 지역 개발 기금	622,224	225,415	304,364	78,949	847,639
②-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042	17,420	21,690	4,270	116,462
②-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31	1,187	1,187	-	31,318
③ 재해 구호 기금	44,321	△11,079	12,632	23,711	33,242
④ 재난 관리 기금	50,921	15,043	20,983	5,941	65,964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60	△8,184	15,852	24,036	108,476
⑥ 남북교류협력기금	5,303	156	190	33	5,459
⑦ 농어촌진흥기금	26,821	972	1,133	161	27,793
⑧ 사회복지기금	6,770	96	333	237	6,866
⑨ 식품진흥기금	6,933	△27	623	650	6,906
⑩ 양성평등기금	3,433	49	140	91	3,482
⑪ 청소년육성기금	2,620	51	110	59	2,671
⑫ 사회적경제기금	1,564	△48	59	107	1,516
⑬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053	117	117	-	5,170
⑭ 정의로운전환기금	2,113	2,593	2,737	144	4,706
⑮ 고향사랑기금	-	114	114	-	114

검사결과 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7,78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87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4. 재무제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2년 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1,037,838	6.4	1,200,448	7.5	△162,610
투 자 자 산	515,585	3.2	620,469	3.9	△104,884
일 반 유 형 자 산	1,732,272	10.7	1,648,740	10.3	83,532
주 민 편 의 시 설	787,989	4.8	765,678	4.8	22,311
사 회 기 반 시 설	12,119,721	74.7	11,725,557	73.3	394,16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0,600	0.2	26,230	0.2	4,370
자 산 총 계	16,224,005	100	15,987,122	100	236,883
유 동 부 채	278,194	17.0	213,950	15.6	64,244
장 기 차 입 부 채	1,281,212	78.5	1,086,643	79.3	194,569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2,868	4.5	69,422	5.1	3,446
부 채 총 계	1,632,274	100	1,370,015	100	262,259
고 정 순 자 산	14,138,694	96.9	13,732,045	93.9	406,649
특 정 순 자 산	371,354	2.5	362,146	2.5	9,208
일 반 순 자 산	81,683	0.6	522,916	3.6	△441,233
순 자 산 총 계	14,591,731	100	14,617,107	100	△25,37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6,224,005	-	15,987,122	-	236,883

2023회계연도 말 충청남도의 자산은 16,224,00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5,987,122백만원보다 236,88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632,274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70,015백만원보다 262,259백만원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22년 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622,422	7.0	583,195	6.7	39,227
운 영 비	857,838	9.6	807,565	9.3	50,273
정부간이전비용	6,978,020	78.1	6,883,424	78.9	94,596
민간 등 이전비용	380,427	4.3	357,652	4.1	22,775
기 타 비 용	95,060	1.0	92,238	1.1	2,822
비 용 총 계	8,933,767	100	8,724,074	100	209,693
자 체 조 달 수 익	3,025,755	34.2	2,993,425	32.8	32,330
정부간이전수익	5,703,693	64.5	6,002,638	65.9	△298,945
기 타 수 익	111,314	1.3	118,032	1.3	△6,718
수 익 총 계	8,840,762	100	9,114,095	100	△273,333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93,005	-	△390,021	-	483,02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재정운영결과는 93,00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90,021백만원보다 483,026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간이전수익 등 수익감소액(△273,333백만원)보다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 비용 증가액(209,693백만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4-1. 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23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261,818	105,239	208,997	158,060
일반(특별)회계	32,145	138	4,139	28,144
기 금	229,673	105,101	204,858	129,916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8,06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261,818백만원보다 103,75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4-2. 채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23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1,173,372	288,761	74,178	1,387,955
일 반 회 계	391,800	100,000	0	491,800
지 역 개 발 기 금	781,572	188,761	74,178	896,155

채무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87,95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173,372백만원보다 214,58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비 전 :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성과목표(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성 과 목 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4	177	302	45	211	46	9,871,308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 목표수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초과 달성 45개, 달성 211개, 미달성 46개로 분석되었음

6.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14	726,486	725,890	99.92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61	281,632	281,505	99.95
	일반회계	60	281,552	281,425	99.95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1	80	80	10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53	444,854	444,385	99.89
	일반회계	52	442,854	442,385	99.89
	기타특별회계	1	2,000	2,000	100
	기 금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	-	-	-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서 총 114개이며, 성과목표수는 119개로 목표달성 지표는 87개, 목표 미달성 지표 32개로 목표달성률은 73.11%로 나타나 전년 목표달성률(76.07%)보다 낮아짐.

7. 결산서 첨부서류

(1) 공유재산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말 현재액		증 감		'23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49,017	14,402,182	3,571	309,122	252,588	14,711,304
토 지	87,604	2,436,256	3,554	100,295	91,158	2,536,551
건 물	956	1,021,848	5	20,511	961	1,042,359
임목죽	837	1,482	△ 1	△ 15	836	1,467
공작물	13,278	9,855,356	4	4,071	13,282	9,859,427
기계기구			2	29	2	29
선 박	8	21,999	1	567	9	22,566
항공기	1	19,547	-	-	1	19,547
무체재산	334	745	4	17	338	762
유가증권	145,609	363,258	-	-	145,609	363,258
용익물권	61	9,684	-	804	61	10,488
회원권	181	4,976	-	-	181	4,976
건설중인재 산	148	667,031	2	182,843	150	849,874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보다 309,122백만원 증가한 14,711,304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재산임.

(2) 물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3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매각, 기타 등	4,255	132,438	443	15,118	159	3,804	4,539	143,752

물품은 전년보다 11,314백만원이 증가한 143,752백만원으로 소방 펌프차(13대), 소방물탱크차(8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임.

(3) 세입 · 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말 현재액	증 감	'23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110,176	31,445	141,621	
보 증 금	53	△1	52	· 하자보수보증금 52
보 관 금	109,349	31,618	140,967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5,193 · 소득 · 주민세 2,318 · 4대보험 등 3,456
잡 종 금	774	△172	602	· 예금이자 13 · 기타 잡종금 등 589

(4)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기채 방법	차입선	발행 금리	상환 기간
합 계			288,761				
기 금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2023.12.31.	188,761	매출공채	매출공채 (지역개발공채)	2.5%	5년 거치 일시상환
일반회계	지방도 정비사업	2023.06.23.	1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3.88%	5년 거치 10년상환

(5) 지방세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비과세 · 감면액 (A)	258,353	262,354	4,001
비 과 세	53,581	54,320	739
감 면	204,772	208,034	3,262
지방세 징수액 (B)	2,867,200	2,879,480	12,280
비과세 · 감면율 (A/A+B)	8.3%	8.4%	0.1%p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총 262,354백만원이고, 감면율은 8.4%로 비과세 · 감면율 법정한도 9.3% 대비 0.9%p 낮아 안정적임.

Ⅱ. 개선해야 할 사항

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2.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개발 필요
3. 정리보류액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침서 제작 필요
4.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 방안 강화
5. 지방세(취득세) 부과 징수 관리 철저
6.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관리
7.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8.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일원화 필요
9. 인공어초 시설사업 관련, 정확한 사업비 수요예측 필요
10. 성과보고 관리 철저(기본사항 중심)

11. 예산운용의 철저한 관리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12. 체납세금 징수 강화 및 전담조직 설치 필요
13. 이월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3천만원이상)
14.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
15. 신중한 예산과목 설정 필요
16. 예산 전용 후 집행잔액 과다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
17. 예산 이체 사유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
18. 3년 연속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19.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
20.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확보
21. 적정한 예비비 편성 운영

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소관 : 탄소중립경제과)

□ 현 황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설치됨.
 -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남도에는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4개 시군에 6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징수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각 시군에 각각 배분하고,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충남도에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24년 세입 예상액은 55,000백만원으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시군에서 96%인 52,900백만원을 차지함.

□ 문 제 점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1, 2항에 따르면 발전소 소재 지역 및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주변 지역을 벗어난 도내 타 시군 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음.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 복합사업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3개 시군 포함한 7개 시군에 사업비 2,736백만원 지원됨.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에 807백만원 지원됨.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2개 시군 포함한 3개 시군에 1,080백만원 지원됨.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시군을 포함한 13개 시군에 540백만원 지원됨.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 사업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270백만원 지원됨.

〈2023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세부내역〉
(화력발전소 지역 관련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사업대상 (관련시군)
		계	국비	도비	
계		10,006	2,263	7,743	
탄소중립경제과		8,226	1,763	6,463	
1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18		18	보령
2	취약계층에너지복지(LED)	294	245	49	5개 시군 (보령, 당진, 태안)
3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개선,조사,연구	378		378	보령
4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 복합사업	2,736		2,736	7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5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110		110	3개 시군 (서천 포함)
6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07		807	15개 시군
7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43		243	11개 시군 (보령, 서천)
8	주민수의 창출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	61		61	4개 시군 (당진)
9	보령,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41		441	2개 시군 (보령, 태안)
1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918	918		15개 시군
11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080		1,080	8개 시군 (서천, 태안)
12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600	600		3개 시군 (서천, 태안)
1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540		540	13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사업대상 (관련시군)
		계	국비	도비	
기후환경정책과		699	500	199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4		54	15개 시군
15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645	500	145	당진
대기환경과		317		317	
16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40		40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1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127		127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18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건강 노출 모니터링)	150		150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물관리정책과		354		354	
19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270		270	6개 시군 (보령)
20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60		60	8개 시군 (당진, 서천)
21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24		24	9개 시군 (당진, 서천, 태안)
보건환경연구원		410		410	
22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330		330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23	환경오염도조사 시험연구비	80		80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액 17,006,133천원(이월예산 제외)

개선 및 권고사항

- 충남도에서는 정부 계획[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2036년)]에 따라 2025년부터 14기(전국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시설세로, 세입의 대다수가 해당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바, 관련 예산을 해당 지역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4개 시군 24년 세입예상액은 52,900백만원으로 23년 세입액인 29,126백만원보다 약 82% 증가하여, 증가한 세입액만큼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발전시설이 위치한 4개 시군을 우선 순위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지역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주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 관련 예산을 발전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담당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2.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개발 필요 (소관 : 교통정책과)

현 황

- 각 특별회계는 설정된 정책목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 단위 등을 설정하고 목표치와 실적치를 계산하여 달성율을 산출하고 있음.
- [균형발전 특별회계]중 [교통정책과]의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은 ‘도민을 위한 교통 안전 대책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라는 성과지표로 사업을 평가함.

문 제 점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은 77번 국도의 일부인 보령시 대천항-오천면 원선도 간을 잇는 해저터널 (이하‘해저터널’)의 개통 이후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됨.
-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해저터널 개통 전/후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확인 결과 해저터널 개통 전/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각 0명이었음.
- [교통정책과]는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을 시행할 때, 사후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업의 성과 및 보완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에 맞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필요함.
- 사업에 적절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사업을 할당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3. 정리보류액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침서 제작 필요

(소관 : 회계장비과)

현 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나,
- 같은법 같은조 제2항(「국세기본법」 준용)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청의 노력으로 과태료는 상당한 기간 고지 및 독촉을 할 수 있음.
- 소방특별회계의 2023년 정리보류액은 총 15건으로 그 금액은 32,471,200원임.
- 이 중 4건은 과태료가 부과된 지 1년 미만인 과태료이며 결손사유는 모두 무재산임.

<소방특별회계 정리보류액(부과된 지 1년 미만 과태료)>

(단위 : 천원)

납부자명	부과일자	결손일자	부과금액	가산금	결손금액
○○엔지니어링(주)	2022-09-07	2023-09-20	600	97	697
주식회사 ○○건설	2022-12-27	2023-06-22	600	54	654
김○○	2022-12-22	2023-12-15	5,000	750	5,750
김○○	2022-12-22	2023-12-15	5,000	750	5,750

□ 문 제 점

- ‘○○엔지니어링(주)’, ‘주식회사 ○○건설’은 결손일자 현재 폐업 및 휴업 상태이며, 현장실사결과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김○○’은 타 체납 및 채무가 확인되지 않고, 결손처분을 받기 약 5개월전에 부동산 매입이 확인됨.
- 다만, 매입한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체납자가 신탁재산만 보유하고 있어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맞으나 이 사실만으로 무재산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손처분 확정이 이르다고 보여짐.
- 확인결과 과태료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교육 미흡으로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기인사이동시 실시하는 교육에 과태료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기 바람.
- 본부에서 과태료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일선의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 방안 강화 (소관 : 예산담당관, 공공기관유치과 등 8개 부서)

□ 현 황

- 충청남도는 8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함. 기타특별회계의 2023년 세입 결산은 1조 53억원이고 세출 결산은 9,753억원으로 집행률이 92.64%임.
- 4개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평균을 하회함.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82.0%,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41.1%,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73.1%, 소방 특별회계 88.1%임.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특별회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비율 (B/A)	세출결산 (C)	집행 비율 (C/B)	순세계 잉여금 (D)	집행 잔액율 (D/B)
합 계	1,050,974	1,052,756	100.2	975,314	92.6	77,442	7.4
도청소재 도시건설	3,759	3,749	99.7	3,073	82.0	676	18.0
균형발전	72,905	72,878	100.0	72,737	99.8	141	0.2
안면도 관광지개발	1,636	1,645	100.6	676	41.1	969	58.9
의료급여기금	388,731	388,782	100.0	388,399	99.9	383	0.1
광역교통시설	1,729	1,729	100.0	1,701	98.4	28	1.6
학교용지부담금	44,679	45,173	101.1	33,012	73.1	12,161	26.9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7,589	18,121	103.0	16,897	93.2	1,224	6.8
소방	519,946	520,679	100.1	458,819	88.1	61,860	11.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성.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일부가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등 상황 발생시 지출할 수 있음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제3항)

- 이는 재정위기를 비롯한 특정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 재원임. 재정안정화계정 모든 재원을 단기적으로 지출하는 자금이 아님.

□ 문 제 점

- 소방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일부만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은행 공공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023년 1.35%임.
- 2023년 이자율이 2022년 급격한 상승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음.
- 만기 1개월이상 ~ 6개월이상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3년 3.5% 내외 수준임.
- 정기예금의 예치시 만기이전 해지하면 이자율이 0.7%수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율보다 저조하므로 자금계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2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일괄적으로 공공예금에만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이자율 상승기의 세외수입 확대 기회를 상실함.
- 충청남도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으로만 운용함.

〈특별회계 예치 공공예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평 잔	2023년 이자수익
합 계	87,989	3,523
도청소재도시건설	267	11
균형발전	5,932	102

안면도관광지개발	703	65
의료급여기금	15,200	371
광역교통시설	898	12
학교용지부담금	31,848	990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2,466	51
소방	30,675	1,921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은 행정업무 특성상 세수 확보 이후 실제 자금 지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해당 특성을 활용해 지출 전까지 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 자금 확보와 지출 시간 차를 활용한 이자소득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임.
-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다년간 자금 운용이 가능함. 이는 단년도 내 모든 재원을 지출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재원이 여유로운 편임.
- 단년도 내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재원은 여유재원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은 조례에 따라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어 기금 지출에 대한 특정이 가능함. 이에 따라 일반적인 출납이 가능한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무방하고 오히려 적합함.
-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노력이 필요함 .
- 이와 함께 타 기금 여유재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지방세(취득세) 부과 징수 관리 철저

(소관 : 세정과)

□ 현 황

○ 2023회계연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 총 2조 9,179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조 8,794억 8,000만원을 징수하여 98.7%의 징수률을 보임.
- 이중, 지방소비세가 47.1%인 1조 3,567억 7,400만원, 취득세가 1조 331억 5,900만원인 35.9%로 두 세목이 전체의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비중		
계	2,880,900	2,917,904	2,879,480	100.0	3,424	35,000
취득세	1,029,100	1,038,556	1,033,159	35.9	132	5,265
등록면허세	75,300	78,040	77,792	2.7	1	247
레저세	22,500	21,806	21,806	0.8	0	0
지방소비세	1,356,700	1,356,774	1,356,774	47.1	0	0
지역자원시설세	106,300	107,824	105,964	3.7	17	1,843
지방교육세	287,000	295,143	283,008	9.8	771	11,364
지난연도 수입	4,000	19,761	977	0.0	2,503	16,281

○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 실제수납액은 '19년 7,854억 5,200만원에서 '21년에는 1조 1,991억 8,9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3년에는 1조 331억 5,9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실제수납액 비율은 평균 99.5%(99.5%~99.7%), 미수납액 비율은 평균 0.4%(0.3%~0.5%)로 큰 변동이 없음.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 (D=A-B-C)	
				(B/A)		(C/A)		(D/A)
계	4,902,100	5,060,258	5,037,468	99.5	1,884	0.0	20,906	0.4
2023년	1,029,100	1,038,556	1,033,159	99.5	132	0.0	5,265	0.5
2022년	1,060,000	1,065,401	1,062,620	99.7	39	0.0	2,742	0.3
2021년	1,101,500	1,204,802	1,199,189	99.5	1,351	0.1	4,262	0.4
2020년	912,400	962,075	957,048	99.5	251	0.0	4,776	0.5
2019년	799,100	789,424	785,452	99.5	111	0.0	3,861	0.5

○ 최근 5년간, 취득세 정리보류액을 보면

- 총 18억 8,400만원이고, 이중 2021년 정리보류액이 전체의 71.7%인 13억 5,1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정理事유별로 보면 ▲무재산 15억 7,400만원(83.5%) ▲평가부족액 2억 7,100만원(14.4%)으로 전체 정리보류액의 대부분인 97.9%임.

※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01.28.)으로 '결손처분' → '정리보류'로 변경

〈최근 5년간, 취득세 정리보류액 및 정리보류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리보류액	연 도 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1,884	132	39	1,351	251	111
	(100.0)	(7.0)	(2.1)	(71.7)	(13.3)	(5.9)

구 분	정리보류액	정리 보류 사유			
		배분금액 부 족	소멸시효 완 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
계	1,884	37	2	1,574	271
	(100.0)	(2.0)	(0.1)	(83.5)	(14.4)

○ 최근 5년간, 취득세 환급액을 보면

- 총 362억 3,100만원이고, 2023년 환급액은 137억 500만원으로 5년간 환급액의 37.8%를 차지하며, 이는 2022년(48억 1,900만원)에 비해 2.84배가 늘어난 것임.
- 특히, 2023년의 경우는 법령개정 사유로 82억 5,100만원을 환급함. 이는 당해연도 환급액의 60.2%를 차지하는 것임.
- 환급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착오 170억 7,000만원(47.1%) ▲납세자 권리구제 104억 300만원(28.7%) ▲법령개정 84억 4,600만원(23.3%)임.

※ 2023년에 환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이 개정(2023.03.14.)되면서 부칙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급 감면에 따른 것임.

〈최근 5년간, 취득세 환급액 및 환급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환급액	연 도 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36,231	13,705	4,819	7,311	6,675	3,721
	(100.0)	(37.8)	(13.3)	(20.2)	(18.4)	(10.3)

구 분	환급액	환급 사유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계	36,231	103	10,403	17,070	134	58	8,446	5	12
	(100.0)	(0.3)	(28.7)	(47.1)	(0.4)	(0.2)	(23.3)	(0.0)	(0.0)

※ 〈관련 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60조(지방세 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 충청남도 도세 조례

□ 문제점

- (취득세 수입)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거래) 상황, 공시지가 하향 조정 예상 등을 감안해 볼 때
 - 취득세 세수 확보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정리보류액 관리) 2021년 취득세 정리보류액이 무재산을 이유로 2020년에 비해 5.17배 상승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했고,
 -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수 및 재정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취득세 환급 처리) 2023년 환급액이 2022년에 비해 2.84배 증가하고, 그 주된 이유가 법령 개정(소급입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 착오(47.1%), ▲ 납세자 권리구제(28.7%) ▲ 법령 개정(23.3%)이 대부분을 차지함.
 - 세금 환급은 납세자에게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키며,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정 신뢰도 저하시키는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수입 중 35.9%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부동산 경기(거래)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상황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취득세 정리보류 사유 중 무재산이 83.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취득세는 도세(道稅)임에도 시·군에서 정리보류할 때에 도(道)에서 특별한 통제 절차가 없는 실정임.
- ⇒ 무재산을 사유로 취득세를 정리 보류할 때에는 철저한 재산 조회를 선행하고, 고액(1,000만원 이상)을 정리보류할 경우에는 도에서 그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23년 취득세 환급액은 법령 개정(소급입법)을 이유로 2022년에 비해 2.84배 증가하는 한편, 최근 5년간 환급액도 납세자 권리구제가 28.7%, 납세자 착오가 47.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정 신뢰를 저하시키고 행정력도 낭비시키는 것으로
- ⇒ 환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 홍보와 함께 법령개정(소급입법)에 따른 환급을 줄이는 등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취득세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납총액(A)	환급액(B)		실제수납액(C=A-B)		비 고
			(B/A)		(C/A)	
계	5,073,699	36,231	0.7	5,037,468	99.3	
2023년	1,046,864	13,705	1.3	1,033,159	98.7	
2022년	1,067,439	4,819	0.5	1,062,620	99.5	
2021년	1,206,500	7,311	0.6	1,199,189	99.4	
2020년	963,723	6,675	0.7	957,048	99.3	
2019년	789,173	3,721	0.5	785,452	99.5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취득세 정리보류액 및 정리보류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 리 보류액(A)	연 도 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1,884	132	39	1,351	251	111	
정 리 보 류 사 유	배분금액 부족(B)	37	4	28		5	
	(B/A)	2.0	3.0	2.1		4.5	
	소멸시효 완성(C)	2		2			
	(C/A)	0.1		0.2			
	무 재 산(D)	1,574	128	39	1,107	214	86
	(D/A)	83.5	97.0	100.0	81.9	85.2	77.5
	평가액 부족(E)	271		214	37	20	
	(E/A)	14.4		15.8	14.8	18.0	

참고자료3 최근 5년간, 취득세 환급액 및 환급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분	환급액 (A)	연도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36,231	13,705	4,819	7,311	6,675	3,721	
환급 사유	행정기관 착오(B)	103	4	4	17	32	46
	(B/A)	0.3	0.0	0.0	0.3	0.5	1.2
	납세자 권리구제(C)	10,403	2,351	1,891	3,781	987	1,393
	(C/A)	28.7	17.2	39.3	51.7	14.8	37.4
	납세자 착오(D)	17,070	3,095	2,894	3,465	5,447	2,169
	(D/A)	47.1	22.6	60.1	47.4	81.6	58.3
	차량 미등기 (E)	134	2	30	23	13	66
	(E/A)	0.4	0.0	0.6	0.3	0.2	1.8
	국세경정 (F)	58	1		18		39
	(F/A)	0.2	0.0		0.3		1.1
	법령개정 (G)	8,446	8,251		3	191	1
	(G/A)	23.3	60.2		0.0	2.9	0.0
	법인정산 (H)	5	1		4		
	(H/A)	0.0	0.0		0.0		
	내부거래(I)	0					
	(I/A)	0.0					
기타(J)	12				5	7	
(J/A)	0.0				0.0	0.2	

6.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관리

(소관 : 세정과)

□ 현 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국가(지방)정책을 권장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임.
-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 비과세 1,620억 1,800만원, 감면 5,812억 2,800만원 등 총 7,432억 4,6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477억 4,800만원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비과세·감면을 역시, 2021년 7.7%에서, 2022년 8.3%, 2023년에는 8.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비과세·감면액은 2,583억 5,300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16.1%인 358억 1,400만원이 증가함.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도 결산액	2022년도 결산액		2023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비과세·감면액 (A)	743,246	222,539	258,353	16.1	262,354	1.5
비 과 세	162,018	54,117	53,581	△1.0	54,320	1.4
감 면	581,228	168,422	204,772	21.6	208,034	1.6
지방세 징수액 (B)	8,416,118	2,669,438	2,867,200	7.4	2,879,480	0.4
비과세·감면율 (A/A+B)	8.1	7.7	8.3		8.4	

※ 충남도의 2023년도 비과세·감면율 8.4%는 17개 광역시도 중 8번째로 중간 순위임.
(평균 : 10.7% / 최고 : 제주특별자치도 17.7% ~ 최저 : 울산광역시 5.9%)

-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을 보면
 - 총 7,432억 4,600만원이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7,162억 7,900만원(96.4%) ▲지역자원시설세 199억 9,700만원(2.7%) ▲등록면허세 69억 6,600만원(0.9%) ▲지방교육세 400만원(0.0%)임.

〈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A)		취득세(B)		등록면허세(C)		지역자원시설세(D)		지방교육세(E)	
				B/A		C/A		D/A		E/A
계	743,246		716,279	96.4	6,966	0.9	19,997	2.7	4	0.0
2023년	262,354	100.0	253,791	96.7	2,135	0.8	6,427	2.5	1	0.0
2022년	258,353	100.0	249,338	96.5	2,089	0.8	6,925	2.7	1	0.0
2021년	222,539	100.0	213,150	95.8	2,742	1.2	6,645	3.0	2	0.0

-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항목별 현황을 보면
 - 총 82개 항목으로, 이중 66개 항목에 2,623억 5,400만원이 비과세·감면되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2,537억 9,100만원(96.7%) ▲지역자원시설세 64억 2,700만원(2.5%) ▲등록면허세 21억 3,500만원(0.8%) ▲지방교육세 100만원(0.0%)임.
 - 또한, 항목별 100만원 이하 비과세·감면이 9개 항목, 2023년 실적이 없는 항목이 7개 항목으로 나타남.

〈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항목별 현황 〉

[전체]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 등 (82개 항목)	262,354	253,791	2,135	6,427	1
%	(100.0)	(96.7)	(0.8)	(2.5)	(0.0)

※ 비과세 · 감면 항목 총 82개 항목 중 100만원 이하 비과세 · 감면이 9개 항목, 실적 없는 항목이 7개 항목으로 2023년에 실제로 비과세 · 감면된 항목은 66개 항목임.

[100만원 이하]

(단위 : 원)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사유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묘지에 대한 비과세 등 (9개 항목)	1,367,960	635,660	196,500	535,800	

[실적이 없는 항목]

(단위 : 원)

지방세 지출 항목	2022년(결산)	2023년(결산)	증감액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등 (7개 항목)	1,847,715,900	0	△1,847,715,900

□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을 보면, 매년 평균 2,477억 4,800만원이 비과세 · 감면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 비과세 · 감면을 역시 2021년 7.7%에서 2023년 8.4%로 2년 만에 0.7%p.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 재정에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감면 허용 범위 확대(열거식의 제한적 허용 → 일반적 허용), 조례감면 장애 요인 개선(총량내 교부세 패널티 폐지) 등을 담은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 계획(2024.02.)」을 추진하고 있어, 비과세·감면이 확대되면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3년 비과세·감면 항목 중 100만원 이하 비과세·감면 항목이 9개 항목에 총 1,367,960원이고, 올해 비과세·감면이 없는 항목도 7개 항목이나 되어, 항목별 편차가 심함.

※ <관련 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 개선 및 권고사항

- 비과세·감면제도는 중앙정부는 정책적 장려 등 차원에서, 납세자는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와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납세자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한 합리적인 비과세·감면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제도는 지방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사후 관리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비과세·감면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①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항목별 현황(전체)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 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계 (82건)	262,354	253,791	2,135	6,427	1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	24,313	21,589	99	2,625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447	4,447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6			26	
4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감면	242	158	8	76	
5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	
6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106	1,106			
7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246	233	1	12	
8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1,962	1,828	3	131	
9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2	12			
1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	
11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	
12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3,015	1,883	6	1,126	
1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 특례	0				
14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191	191			
15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3,997	3,276	2	719	
1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	
17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감면	16	16			
1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77	77			
19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0				

연번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20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0				
2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0				
22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301	301			
23	장애인에 대한 감면	4,349	4,349			
2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	
2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202	99	-	103	
2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142	3,142			
2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101	1,094		7	
28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5	5			
2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969	965	-	4	
30	주거안정지원 등에 대한 감면	145	145			
3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6,942	16,942			
3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62		62		
3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23,573	23,573			
3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70	170	-		
35	농업인에 대한 감면	12,377	12,377			
36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감면	2	2			
37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3,677	3,677			
38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3,147	3,147			
39	임업인에 대한 감면	92	92			
40	어업인에 대한 과세 특례	91	78		13	
41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38	138			
42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1,342		1,342		
43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3,567	3,567			
44	농어촌 주택에 대한 감면	486	486			
45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5,276	5,266	10		
4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13	13			
4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38	38			
48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2,025	2,025			
49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2,401	2,401			
50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175	1,169	6		
51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1		1		
52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8,585	28,585			

연번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 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53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58	55	3		
54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7,121	17,121			
55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	3			
56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		
57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58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6,016	6,016			
59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17,677	17,677			
6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0				
61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747	1,747			
62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6	6			
63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74	1,374			
64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	107	107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	2,189	2,189			
6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7,709	37,709			
6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6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0				
69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240		240		
7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0,678	9,069	172	1,437	
71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84	184			
72	국가가 사용하는 공공·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2			42	
73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05	-		105	
74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1,391	1,391			
75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13	13			
76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2,482	2,482			
7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6,473	6,473			
78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			
79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027	881	146		
8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	-	-			
8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632	632			
8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36		34	1	1

②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항목별(100만원 이하)

(단위 : 원)

연번	지방세 지출 항목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계 (9개 항목)	1,367,960	635,660	196,500	535,800	
5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55,780			55,780	
1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4,410			24,410	
11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3,200			13,200	
16	종교단체·향교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15,780			15,780	
2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426,630			426,630	
56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66,500		166,500		
6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0,000		30,000		
78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462,860	462,860			
8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	172,800	172,800			

③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실적 없는 항목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방세 지출 항목	2022년(결산)	2023년 (결산)	증감액
	계 (7개 항목)	1,847,715,900		△1,847,715,900
1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 특례	4,859,740	0	△4,859,740
19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22,400	0	△22,400
20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553,040	0	△553,040
2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49,500	0	△49,500
57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27,565,620	0	△127,565,620
6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23,394,030	0	△23,394,030
6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1,691,271,570	0	△1,691,271,570

7.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소관 : 농식품유통과)

현 황

- 사업비 전액(20억원) 계속비 이월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추진('23.9.~'24.6.),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제출했음.

문 제 점

- 실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미추진 경위는 올해 1월 설계 어려움 및 공사비 재산출 등을 고려해 대체사업이 제안되었고, 2월에 센터 기능의 실효성 약화,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됨에 따라 본사업 재원을 활용한 지역특성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따라서 계속비 이월된 해당 사업의 재원을 활용한 지역특성 대체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군비가 기 투입되어 확보된 사업부지에 새로운 사업 개발과 사업 효과성 분석에 소요되는 예산 및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월된 사업비 외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함.

8.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일원화 필요

(소관: 농업정책과)

현 황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충남도 내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은 개별 45만원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2020년 시작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2년부터 국 간 예산 한도에 따른 불이익 해소와 전문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어업분야는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에 예산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을 총괄하고, 어업은 어촌산업과에서 별도로 담당함.

문 제 점

- 하지만, 현재 농업정책과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예산에 농민수당 행정비 및 시스템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촌산업과에는 연안 6개 시군에 지급되는 어민수당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어, 어업수당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미비된 상태임.

개선 및 권고사항

- 농어민수당의 사업특성 상, 분야별에 따른 수당 지급액이 다르지 않고, 단순 충남도 내 주민등록과 경영체 등록·유지를 대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이원화하여 분야를 나누어 운영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이미 농업·임업·축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일원화하고, 농어민수당에 대한 민원발생 시,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9. 인공어초 시설사업 관련, 정확한 사업비 수요 예측 필요

(소관: 수산자원과)

현 황

- 충청남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 확충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효율화를 통하여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1971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이후 단순했던 어초에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1990년대 초반 GPS가 상용화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인공어초 제작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음.

문 제 점

- 충청남도 인공어초 시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사업비 26억 4,700만원으로 68ha(5개 해역, 13개 단지)를 시설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사업비 24억 8,400만원으로 30ha(5개 해역, 9개 단지)를 시설하는 등 인공어초의 시설 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충청남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가능해역에 적합한 어초의 종류를 3배수 이상 추천 받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초의 종류를 선정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등록된 93종의 인공어초는 각각의 규모와 단가가 상이함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어초 시설면적 확보를 위해 관련된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업비 수요예측이 필요함.

10. 성과보고 관리철저(기본사항 중심)

(소관 : 예산담당관, 산업경제실 등 8개 실·국)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 이에 충남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단위 : 개, 억원)

연도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개수	지표수				
2016	21	135	246	36	180	30	5조 5,249
2017	19	134	247	40	174	33	5조 5,934
2018	21	148	275	43	201	31	5조 8,801
2019	21	142	249	54	161	34	6조 8,926
2020	21	148	255	42	162	51	8조 5,547
2021	23	159	279	38	189	52	9조 2,519
2022	47	200	43	47	200	43	9조 6,149
2023	24	177	302	45	211	46	9조 8,713
				14.9%	69.9%	15.2%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 달성(100~130% 미만 달성), 미달성(100% 미만 달성)

-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5개 달성 211개 미달성 46개이고 목표달성률은 84.8%로 분석되고 있음.

□ 문 제 점

- 2016~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시 성과지표와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안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이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큰 사례가 있음.

○ 처리결과 미반영 사례

(자치경찰위원회)

정책목표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비 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한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위원회 상정 안전(건수)	각 회의에 상정된 안전 수의 합계	· 처리결과 미반영 ('22회계연도와 측정산식 동일)

※ 처리결과 : '22년 결산검사 자치경찰위원회 측정산식을 위원회 상정안전 중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심의 의결 건수로 대체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실적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 노력 등이 목표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함.

○ 과거실적 추세치 미고려 사례

(산업경제실)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취업자수(천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창출수	목표	135	100	· 과거실적 129
		실적	129	120	
		달성률 (%)	95.5	120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권리구제(건)	노동 권리구제 횟수	목표	37	39	· 과거실적 48
		실적	48	49	
		달성률 (%)	129	125	

노동권익 교육활동(명)	노동교육 대상 인원	목표	2,000	2,100	· 과거실적 2,620
		실적	2,620	3,599	
		달성률 (%)	131	17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건)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횟수(개수)	목표	390	410	· 과거실적 522
		실적	522	569	
		달성률 (%)	134	139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업체 수)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선정	목표	9	9	· 과거실적 12
		실적	12	13	
		달성률 (%)	130	144	

※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에는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목표치 상향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음.

* '21년 10개사 → '22년 12개사 → '23년 13개사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직접 조사처리 건수/ 전체 접수민원 건수*100	목표	75	60	· 과거실적 75.5
		실적	75.5	94.6	
		달성률 (%)	100	157.6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위원회 상정안전(건수)	각 회의에 상정된 안전수의 합계	목표	100	105	· 과거실적 150
		실적	150	173	
		달성률 (%)	150	164.8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명)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에서 자녀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목표	720	730	· 과거실적 1,078
		실적	1,078	891	
		달성률 (%)	149.7	122	

(기후환경국)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건강사후관리수 혜인원(명)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중 사업수혜자(카드뮴 참고치 초과자 및 희망자)	목표	230	230	· 과거실적 261
		실적	261	411	
		달성률 (%)	113.48	178.7	

(농업기술원)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양념채소 현장애로기술 개발	영농현장 실용화기술개발 건수	목표	5	1	· 과거실적 6
		실적	6	8	
		달성률 (%)	120	800	

○ 중·장기 추진계획 미고려 사례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위원회 상정안전(건수)	각 회의에 상정된 안전수의 합계	목표	100	105	· 과거실적 150 · 고려가능한 치안이슈
		실적	150	173	
		달성률 (%)	150	164.8	

※ 예정되어있는 행사(대백제전)의 안전지원 등 주요 치안이슈에 따른 상정안전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성과분석 시 초과 달성(130% 이상)과 미달성(100% 미만 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실적치 환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원인분석이 누락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성과분석과 원인분석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있음.

○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 사례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배정 시 보급 목표대수 설정	목표	280	300	·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329	452	
		달성률 (%)	117.5	150.7	

(농업기술원)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양념채소 현장애로기술 개발	영농현장 실용화기술개발 건수	목표	5	1	·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6	8	
		달성률 (%)	120	800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건수)	현장실용화 개발 건수	목표	1	1	·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1	3	
		달성률 (%)	100	300	

(산림자원연구소)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금강,안면도) 이용객 수(천명)	수목원, 휴양림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일일 정산)	목표	315	330	·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426	598	
		달성률 (%)	135	181	

○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 사례

(농업기술원)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충남지역 적합한 마늘 우량 계통선발	우량 계통 선발건수 및 보급량	목표	1	5	·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1	2	
		달성률 (%)	100	40	

○ 성과분석과 원인분석의 불일치 사례

(기후환경국)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수소자동차 보급(대)	수소자동차 보급대수	목표	461	468	· 성과분석(수요증가) 도민의 수소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탄력적 보급
		실적	461	228	
		달성률 (%)	100	48.7	

※ 원인분석(구매수요 급감) : 수소승용차 모델한정,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소차 구매수요 급감

(농업기술원)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비 고
순도높은 식량작물 종자생산	포장, 종자검사, 합격종자생산량 (톤)	목표	130.0	113.0	· 성과지표는 초과달성
		실적	140.2	153.0	
		달성률 (%)	108	135.4	

※ 원인분석(부정적) : 순도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콩 우량종자생산

- 맥류 출수기 잦은 강우로 특히 수밭아에 약한 재안참쌀보리는 수밭아로 인해 받아들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불합격
- 증식종 서리태 콩은 극만숙종으로 숙기가 늦어 동계작물 맥류와 2모작 재배시 파종이 늦어지고, 가을철 강우로 파종기 일실 우려

□ 개선 및 권고사항

- 충청남도가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주요 목적은 측정 가능한 영역의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사업(또는 부서별)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수행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에 있음.
- 이러한 목적성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2016~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체계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계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해를 거듭하여 제기된 바 있음.
- 하지만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위한 교육내용을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단순한 교육(연1회, 1시간이내)과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을 조언하는 비대면 컨설팅이 전부여서 상기한 주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임.
- 향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재차 건의함.

11. 예산운용의 철저한 관리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3천만원 이상)

(소관 : 농업정책과 등 16개 부서)

□ 현 황

〈전액 미집행 및 집행률 10%미만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집행내역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합계	30,220	1,194	29,0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9건	8,968	0	8,968	전액미집행 사업
청년스마트팜 교육장 건립계획 등 13건	21,252	1,194	20,058	집행률10% 미만사업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합계		30,220	1,194	29,026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60	0	60	0
해양정책과	연안환경 생태복원	128	0	128	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 지방도로건설(충북도계~천안)	143	0	143	0
경로보훈과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300	0	300	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	0	600	0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1,200	0	1,200	0
문화유산과	대동누리 청년군마당(논산)	1,560	0	1,560	0
농식품유통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000	0	2,000	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성환~입장)	2,977	0	2,977	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청년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00	14	2,986	0.46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 지방도건설(금산~진산)	571	5	566	0.88
문화정책과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	1,020	19	1,001	1.90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가족 플라자 건립추진	1,101	23	1,078	2.09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830	40	790	4.81
도로철도항공과	호우피해복구 추진	1,662	83	1,579	5.04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 국공유지 매입	130	9	121	6.5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6,140	418	5,722	6.8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임천~강경)	684	49	635	7.11
체육진흥과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1,080	82	998	7.64
자치행정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4,000	356	3,644	8.89
기후환경정책과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없는 환경조성	95	9	86	9.04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임천~강경)	939	87	852	9.31

문 제 점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조 1,628억원, 세출결산액은 8조 8,960억원, 잉여금 2,668억원,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 제외한 불용액은 726억원으로 불용율 0.79%임.
이는 2022회계년도 0.9%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음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계획 수립' 등 9건 8,968백만원은 예산 편성 후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하였음.
- 집행률 10%미만 사업은 '청년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등 13건으로 불용액이 20,058백만원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수립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감액 또는 사업을 변경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12. 체납세금 징수 강화 및 전담조직 설치 필요

(소관 : 세정과)

□ 현 황

○ 지방세(도세)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금 액 (%)	38,424 (100)	13,164 (34.3)	670 (1.7)	4,684 (12.2)	19,906 (51.8)

※ 미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징수결정액	2,917,904	2,900,268	2,705,532
미수납액 (%)	38,424 (1.3)	33,068 (1.1)	36,093 (1.3)

※ 연도별 결산서 내용임

○ 미수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미수납액 합계	정리보류액 (불납결손)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및 부도	무재산
38,424 (100%)	3,424 (8.9)	9,925 (25.8)	11,705 (30.5)	5,196 (13.5)	3,121 (8.1)
행방불명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납기 미도래
622 (1.7)	496 (1.3)	110 (0.3)	1,754 (4.6)	30	2,041 (5.3)

○ 고액체납자 현황(도세+시군세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 원(명)	체 납 액
합 계	4,010	87,272
500만원 이상	1,988	13,882
1천만원 이상	1,403	23,273
3천만원 이상	296	11,373
5천만원 이상	212	14,612
1억원 이상	97	15,476
3억원 이상	8	2,899
5억원 이상	5	3,613
10억원 이상	1	2,144

□ 문 제 점

- 매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8,424백만원, 2022년 33,068백만원 등 매년 징수결정액의 1.1~1.3%가 체납됨.
- 500만원 이상 고액(도세, 시군세 포함) 체납자가 4,010명 87,272백만원이며 1억원 이상도 111명 24,132백만원을 차지
-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생원인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해마다 체납세금은 줄지 않고 있음.
- 타 시도는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로지 충남도만 미설치로 선제적 대응 어려움.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충북도와 충남도에만 조직이 없어 설치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설치

전국(시도별) 체납세 징수전담조직(팀) 운영 현황

구 분	과(팀)명	시작년도	인력규모 (팀, 인원)	비 고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2001	5팀(42명)	
부산광역시	징세특별기동팀	2003	1팀(8명)	
대구광역시	체납정리팀	2004	1팀(5명)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	2015	4팀(44명)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	2005	1팀(8명)	
대전광역시	지방세체납팀	2004	1팀(7명)	
울산광역시	체납팀	2003	1팀(5명)	
	특별기동징수팀	2023	1팀(9명)	
세종특별자치시	징수팀	2012	1팀(6명)	
경기도	조세정의과***	2014	7팀(44명)	
강원도	체납관리팀	2016	1팀(4명)	
충청북도	체납관리팀	2022	1팀(5명)	
충청남도	없음	-	-	세정팀내 1명이 담당
전라북도	체납징수팀	2020	1팀(3명)	
전라남도	체납징수팀	2018	1팀(4명)	
경상북도	체납정리팀	2015	1팀(4명)	
경상남도	체납관리팀	2010	1팀(3명)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	2012	1팀(6명)	

* 38세금징수과(서울특별시) : 38세금총괄팀, 38세금1팀 ~ 4팀

** 납세협력담당관실(인천광역시) : 징수기획팀, 체납정리팀, 통합징수팀, 기업민원팀 [임기제 12명 포함]

*** 조세정의과(경기도) : 체납총괄팀, 법인조사 1 ~ 2팀, 기획조사팀, 광역체납 1 ~ 2팀, 세외수입징수팀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 원인인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폐업 및 부도 등에 전문적인 현장조사 및 채권확보 필요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예금조회, 가택조사, 은닉재산 발굴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 수도권을 제외한 도 광역지자체 중 충남도의 이월체납액(도세) 규모가 313억원으로 큰 편이나 체납전담 조직의 부재로 징수율은 중하위권에 그쳐 기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
- 울산광역시는 체납팀과는 별도로 2023년도부터 특별징수팀을 신설하였고 충북도에서도 2022년부터 체납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음.

13. 이월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3천만원이상)

(소관: 자치행정과 등 13개 부서)

□ 현 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12,938	7,118	5,393	426	
자치행정과	통일플러스센터건립	800	356	239	205	설계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운영	552	472	34	46	사업기간 연장
일 자 리 기업지원과	외국인노동자지원	300		300		
(구)기업지원과	음봉일반산단진입도로사업지원	506	475	31		
환경관리과	자원순환 사회조성 보조	58		58		
물관리정책과	충남 호소환경 생태조사 용역	86	38	48		
하천과	하천기본계획수립	431	274	156		
건설정책과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600	381	44	175	용역기간 미도래
건설정책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370	336	34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99		999		
해양정책과	연안환경 생태복원	128		128		
수산자원과	근해어선 감척	8,068	4,786	3,282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장비등 지원	40		40		
사고이월		1,067	965	102		
경로보훈과	보훈시설건립기능보강	214	170	44		
도로철도항공과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853	795	58		

□ 문 제 점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의 정확한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데, 명시이월된 사업 중 30백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13건 5,393백만원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중 30백만원이상(2건) 102백만원 발생하였음.
- 불용액 발생건수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 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명시이월 신청시 정확하지 못한 계획으로 예산현액을 신청하였다가 연도말에 과다 편성된 불용액(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히,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명시이월 사업 중 13건 5,393백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지양하기를 권고함.

14.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

(소관: 기후환경정책과)

현 황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①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구)탄소중립정책과 소관의 ‘생태계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은 부담금 징수액의 40/100 이상 60/10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비율만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생태계보전 부담금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연도	당초예산액	최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생태계보전 부담금	2021	1,300	1,300	3,686	3,686
	2022	1,000	3,082	3,772	3,772
	2023	1,000	3,664	3,664	3,664

문 제 점

- 2023년 부담금의 당초예산액은 10억원이었으나, 최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은 36.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7배 가량 증가하였음.

- 이러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도에도 발생해 2021년 당초 예산액은 13억원, 2022년은 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각각 36.9억원, 37.7억원으로 당초예산액과 최종 예산액(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매우 큼.
- 2022년과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부담금 수입이 추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거나, 동결 조치하는 등 과소추계로 인한 세입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어렵게 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산정할 때 전년도 징수 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함.

15. 신중한 예산과목 설정 필요

(소관: 도로철도항공과)

현 황

-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 정비사업시 민간의 부담분 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해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외 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담금으로 편성
- 결산업무 과정에서 세입예산 과목 설정의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부금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함.

<도로철도항공과 세외수입 과목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기부금수입 (224-03)			5,000	5,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	부담금 (236-01)	5,000	5,000		

문 제 점

-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은 세입예산 총액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당초 예산과목 설정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함.
-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
- 통계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의 징수율은 크게 낮아지는 등의 통계상 왜곡이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수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예산과목에 설정함으로써 지방예산의 통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16. 예산 전용 후 집행잔액 과다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

(소관 : 문화정책과)

□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K-POP 및 국악 해외공연(독일) 추진’ 사업에서 ‘지역예술 진흥’사업으로 110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의 전용 사례>

(단위 :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집행잔액
				감액	증액	
문화예술	K-POP 및 국악 해외공연(독일)추진	민간인국외여비	336	110		8
	지역예술 진흥	행사운영비	29		110	33

□ 문 제 점

- 문화정책과는 소관 사업에 대해 1억 1천만원을 전용한 후 3,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전용액을 과도하게 편성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
- 전용을 한 ‘K-POP 및 국악 해외공연(독일) 추진’ 사업 또한 예산액의 1/3을 전용했다는 점에서 본예산액의 과다 편성 문제가 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적 제도로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일부 침해한다는 점에서 전용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
- ‘K-POP 및 국악 해외공연(독일) 추진’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
- ‘지역예술진흥’사업은 적절한 규모의 전용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17. 예산 이체 사유의 정확한 기재 필요

(소관 : 예산담당관)

현 황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해당 기구로 예산을 옮겨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총 240건이며, 예산의 이체 사유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업무이관’, ‘부서통합으로 인한 예산 이체’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이체요구’, ‘이체’, ‘예산 이체’등으로 명시해 사유가 불분명함.

문 제 점

- 예산의 이체는 사유가 이체요구, 이체, 예산 이체 등으로 표기되면서 결산서를 통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예산서나 결산서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체의 사유를 불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문서 작성이라 할 수 없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이체의 경우 건별로 정확한 사유를 명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기해,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3년 연속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소관 : 도로철도항공과 등 6개 과·소)

현 황

- 3년 연속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은 모두 9개로 도로철도항공과의 사업이 3개이며, 산림자원연구소 2개 그 외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장애인복지과, 해양정책과가 각 1개임.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공통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사업이라는 점임. 이 가운데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사업은 3년간 0%대의 집행률을 보임.

문 제 점

- 3년 연속 집행률이 한 자리수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사업 외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광역 해양 자원 순환센터 건립’이 낮은 집행률을 보임.

〈2021~2023년 3년 연속 집행부진(50% 이하) 사업〉

(단위 : %)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	2022	2023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7.75	19.93	33.80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0.00	7.47	14.2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90	11.69	6.80
산림자원연구소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전환사업)	14.52	11.98	43.81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5.74	0.00	4.81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태안)(전환사업)	0.39	23.84	30.49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0.00	0.00	0.0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0.00	26.21	9.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42.84	48.71	45.66

-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의 지속적인 이월은 충청남도청의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설계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공정별 연도별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개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의 설계 지연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착공되지 못한 것이 집행부진의 주요한 사유이나, 수년에 걸친 계속비 이월은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함.

19.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

(소관 :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 현 황

-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9조 1,460억원의 예산현액에서 8조 8,960억 원을 집행하고 2,105억 원을 다음연도 이월 및 보조금 반납하여 39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전체적인 집행비율은 97.3%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그룹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목그룹) 부분은 예산액·예산현액 1,952억 원 중 1,892억 원을 지출 및 보조금 반납액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60억 8,400만원(3.1%)으로 나타나 잔액 발생 비율이 전체 0.4%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그룹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목그룹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 D)	잔액비율 (E/A*100)
인건비	195,245	195,245	189,055		106	6,084	3.1%
물건비	159,252	168,994	161,378	3,710	84	3,822	2.3%
경상이전	4,920,351	4,943,832	4,922,814	9,242	4,649	7,127	0.1%
자본지출	2,633,484	2,887,098	2,676,618	187,153	5,571	17,756	0.6%
내부거래	931,044	931,044	931,044			0	0.0%
예비비 및기타	37,113	19,813	15,082			4,731	23.9%
합 계	8,876,489	9,146,026	8,895,991	200,105	10,401	39,520	0.4%

□ 문제점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의 필요 재원을 편성하는 과정이며 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은 사업목적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여야 함.
- 인건비는 사업의 집행시기가 고정되어 집행잔액을 이월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이므로 집행잔액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있음.
- 직원의 신분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인건비 소요액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추경예산에 그 변동규모를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
- 이는 매년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집행잔액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건비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다소 낮아졌음을 의미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도 중에 인건비 집행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인건비 소요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부서에서 집행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부서를 포함한 전 구성원의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확보

(소관 : 예산담당관)

현 황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①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②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③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④분야별 자원배분계획 ⑤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⑥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사업의 계획액과 실제 (최종)예산액과의 차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라 하며 반영비율이 100%에 근접하여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음을 나타냄.

문 제 점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충청남도의 2020~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2020~2022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 정책사업비 반영비율〉¹⁾

구분	FY2020	FY2021	FY2022		
			충남비율	유형 (도지역)평균	전국평균
반영비율	99.1%	96.5%	95.6%	98.4%	95.8%

1) 반영비율=(당초예산 정책사업비-에비비)/중기계획 정책사업비

-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사업 반영비율은 2020 회계연도에는 99.1%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1년 96.5%, 2022년 95.6%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의 2022년 반영비율(95.6%)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 평균(98.4%)이나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반영비율 평균(95.8%)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임.
- 또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중기계획과 최종예산액의 차액 및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충청남도 중기계획 및 최종예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중기계획액(A)	9,237,856	9,970,419	10,302,797	
최종예산액(B)	10,270,898	10,661,376	10,763,399	
차액(A-B)	-1,033,042	-690,957	-460,602	
편성비율	89.9%	93.5%	95.7%	

- 중기계획액과 실제 최종예산액의 편성비율은 2021년 89.9%에서 2023년 95.7%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23년 차액은 4,606억 원으로 아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의 흐름은 중기계획 수립 ⇨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의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은 기관 재정운용의 기초 과정임.

- 매년도 세입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세출사업의 우선 재원투자 방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규모와 예산편성액이 근접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국내 경기 및 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예측하지 못한 재정투입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해당연도 예산 규모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임.
- 만약 중기계획액과 예산편성 규모가 많이 발생한 경우 지방 재정법 제33조 ⑧항(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21. 적정한 예비비 편성 운영

(소관 : 예산담당관)

□ 현 황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190백만원으로 호우피해 특별 재난 지역소득 보전지원 사업 외 33건 총 17,679백만원을 집행함.

◆2023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 성립후 증감액 ㉒	예산 현액 ㉓=㉑ +㉒	지출액	집행잔액			
					계 ㉔=㉑+ ㉕+㉖+ ㉗+㉘+ ㉙	보조금 정산잔 액㉚	예 산 절감액 ㉛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 발생㉜
예비비	21,040	△17,300	3,740		3,740			3,740
일반 회계	20,880	△17,300	3,580		3,580			3,580
특별 회계	160		160					160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

(단위 : 백만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지출잔액 ㉔=㉑-㉒-㉓
일반회계	합 계	20,880	17,300	17,177	42	81
	801-01 일반예비비	10,880	7,403	7,348	42	13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00	9,897	9,829		68
	801-03 내부유보금					

기 타 특 별 회 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안면도 관광지개 발 특별회계	소 계	137	137	137	
		801-01 일반예비비	137	137	137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소 계	278			
		801-01 일반예비비	278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소 계	16			
		801-01 일반예비비	16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소 계	160			
		801-01 일반예비비	160			
		801-03 내부유보금				
	소방특별 회계	소 계	719	366	366	
		801-01 일반예비비	719	366	366	
특별회계 합계		1,310	503	503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상의 예비비 사용내역과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년도	세출총괄표의 예비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2023	21,040	△17,300		3,740
2022	68,210	△34,695		33,515
2021	60,353	△52,600	7,753	

□ 문 제 점

-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 예산액과 예비비지출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액 간 상이점 확인
 -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 예산액은 **21,040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 5장 예비비 지출(789P)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액의 합계는 **22,190백만원**으로 표기됨.
 -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 예산액은 세부내역을 확인[예비비 사용총괄조서(791P)]한 바,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0,880백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310백만원** 중에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60백만원**만을 더한 금액으로 세출 총괄표상의 예산액에 표기한 것으로 확인함.
 - 특별회계는 ①도청소재특별회계 ②균형발전 특별회계, ③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④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⑤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⑥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⑦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⑧소방특별회계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 2023년도 예비비 예산편성 자체가 없는 ①도청소재 특별회계 ②균형발전 특별회계 ⑥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 제외하고,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 예산액에 포함된 ⑦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개의 특별회계 외에 다음 4개의 특별회계 ③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④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⑤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⑧소방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각 특별회계 자체 사업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각 특별회계사업예산에서 예비비의 집행잔액으로 예비비를 결산하였음.

그 결과 예비비는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가 감소하게 되고 특별회계 사업 내에서 사업 예산과 집행잔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함.

- 세출 총괄표와 예비비 지출내역에서의 상이점 발생 사유는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사업예산 구조화 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예비비로 설정이 아닌 기타 사업 분야로 설정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올바른 사업 구조화를 통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세출 결산 총괄(16p)에서 미합산된 특별회계 예비비의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137	137	13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27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16				
	소방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719	366	366		
	합 계		1,150	503	503		

- 예비비 내역이 세출 총괄표에서 예비비 예산액과,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예비비 예산액이 다르게 되면 총괄 예비비 예산내역을 확인할 때, 세입·세출총괄에서의 예비비 예산내역을 각 특별회계별 분야부문 예산액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구조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비비예산 및 지출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의 지출결정의 평균은 74%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의 지출결정의 평균은 13%로 나타남.

-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 지출결정과 지출은 2021년 2022년 2년연속 0%이며, 2023년도에도 전체금액이 5억3백만원으로 각 4개의 특별회계 ②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③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④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⑦소방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각 특별회계 자체내 사업예산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이유가 크게 존재하지도 않음.

◆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 및 지출결정 비율

(단위: 백만원)

년도	일반예비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대비 지출결정 비율
	예산	지출결정	예산대비 지출결정	예산	지출 결정	예산대비 지출결정	
2023	20,880	17,802	85%	1,310	503	38%	83%
2022	68,210	34,695	51%	3,334	0	0%	49%
2021	60,147	52,600	87%	4,534	0	0%	81%

◆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대비 지출비율

(단위: 백만원)

년도	일반예비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대비 지출 비율
	예산	지출	예산대비 지출비율	예산	지출	예산대비 지출비율	
2023	20,880	17,177	82%	1,310	503	38%	80%
2022	68,210	17,265	25%	3,344	0	0%	25%
2021	60,147	52,293	87%	4,534	0	0%	87%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장부상에 예비비의 내역을 보다 세심히 확인하여 기재할 것이 요구됨.
 - 각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내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전부가 총괄 예비비 예산내역 안에 포함되게 하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액의 합계가 세출 총괄표상의 예비비 예산액과 일치하게 하는 조치가 요구됨.
 - 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일반회계와 같이 총괄표의 작성이 요구됨.
- 2023회계년도 결산서안 목록을 살펴보면 현재 II.세입세출 결산 제2장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으로 구분하고 제2장 일반회계에서는 총괄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총괄표가 없이 각 특별회계 내역만을 적시함으로 총괄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총괄표 작성이 요구됨.

※ <관련 법규>

예비비는 법률(지방자치법 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그 예산의 한도와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